

평창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5. 8. 2 (화) 평창군수(농정과장)

나. 회부일자 : 2005. 9. 20(화)

다. 상정일자 : 2005. 9. 23(금) 제123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5. 9.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농정과장 백승규)

가. 제안이유

-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한 순회 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부품대금 징수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대형 농기계 수리 및 노후 농기계의 활용도를 증대시켜 농가 수리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임

나. 주요골자

- 제명 띄워쓰기 권장에 따른 제명 개정
-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시 감면되는 부품 대금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감면액을 상향조정. (안 제5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함경호)

가. 본 조례안은 농기계 반값 공급 중단이후

- 농가 보유 농기계가 대부분 노후되었고
- 농기계 기종이 중소형에서 대형화됨에 따라 농기계 수리비가 농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어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무상지원금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나. 이 조례가 개정 되면

- 어려운 농가의 농기계 수리 비용 부담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를 악용한 폐농기계 수리 등 무분별한 농기계 수리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참고로 도내에서는 현재 속초시, 삼척시, 원주시, 양양군, 영월군에서
농기계 수리 부품 무상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라. 기타 조례안의 자구, 띄어쓰기 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평창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부 끝.**